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경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25

발의연월일: 2021. 5. 11.

발 의 자: 유경준 · 김용판 · 김은혜

박수영 • 박형수 • 서병수

송석준 • 윤창현 • 윤한홍

정동만 • 황보승희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작년 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3년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음.

그런데 부동산 가격 급등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하여 시가표준액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,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재산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.

이에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, 특례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안 제111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1조의2제1항 중 "1주택(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)"을 "1주택"으로 한다.

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"제111조의2, 제112조"를 "제112조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11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1조의2(1세대 1주택에 대한	제111조의2(1세대 1주택에 대한
주택 세율 특례) ① 제111조제	주택 세율 특례) ①
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<u>1주</u>	1 <u>구</u>
택(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	<u>택</u>
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	
<u>한정한다)</u> 에 대해서는 다음의	
세율을 적용한다.	<u>.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	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
정법률 부칙	정법률 부칙
제2조(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	제2조(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
세 세율 특례의 유효기간) <u>제1</u>	세 세율 특례의 유효기간) <u>제1</u>
<u>11조의2, 제112조</u> 및 제113조의	<u>12조</u>
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	
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	
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	
적용한다.	